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76215 취득세등 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A지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이○○
피 고	○○시장
변 론 종 결	2023. 5. 17.
판 결 선 고	2023.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23.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7,298,750[1]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는 "17,298,55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류임이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17,298,750"원으로 정정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종교단체인 B의 산하단체로, 2015. 6. 25. ◯◯시 C 임야 2,8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위 토지 지상에 연면적 1,313.94㎡의 다가구주택용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7. 5. 25. 사용승인을 받아 2017. 6. 22. 이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5. 23.경부터 2017. 6.5.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37,929,54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21. 2. 2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단체가 종교행위 목적으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대상이다'라는 취지로 위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1. 3. 23. 이를 거부하였다.

라. 원고는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2021. 4. 15. 이의신청을 거쳐 2021. 8. 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22. 6. 20.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위 거부처분 중 이 사건 건물 연면적 합계 1,313.94㎡ 중 766.37㎡에 대한 취득세와 그 부속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고는 위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22. 7. 14.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다음과 같이 감액하고 이를 원고에게 환급하였다[이하 피고의 2021. 3. 23.자 거부처분 중 위 감액하고 남은 취득세 17,298,750원(= 최초 취득세 신고금액 37,929,540원 - 감액된 취득세 금액 20,630,790원)에 대한 부분을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취득세	신고금액(원)	감액금액(원)	잔여 세액(원)
이 사건 건물	33,111,720	19,314,080	13,797,640
이 사건 토지	4,817,820	1,316,710	3,501,110
합 계	37,929,540	20,630,790	17,298,75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 8, 9, 10호증, 을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전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 모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러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다.

3.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건물의 동별 구조 현황 및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명칭	구조	층별	용도	연면적
가동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계단실	24.15㎡
		2층	다가구주택	210.94㎡
		3층	다가구주택	210.94㎡
		4층	다가구주택	210.94㎡
나동	철근콘크리트구조	1층	계단실	24.15㎡
		2층	다가구주택	210.94㎡
		3층	다가구주택	210.94㎡
		4층	다가구주택	210.94㎡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구분		바닥면적(㎡)	연면적(㎡)
종교용	입도치성 및 집회실	85.1	218.99
	수련세미나실	42.5	109.48
	기도실	170.1	437.9
	소계	297.7	766.37
종교지원 시설용	행정지원실	42.5	109.48
	임원실	42.5	109.48
	휴게실	85.1	218.99
	소계	170.1	437.95
숙소 및 창고용	선감 등 숙소	21.9	56.27
	집기 및 창고	20.7	53.35
	소계	42.6	109.62
합계		510.4	1,313.94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관련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 제1항에서 비영리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해당 부동산을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의 범위는 해당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영리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사택이나 숙소를 제공한 경우 사택이나 숙소의 제공이 단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그곳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과 크게 관련되지 않는다면 그 사택이나 숙소는 비영리사업자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지만, 그 구성원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고 사택이나 숙소에 체류하는 것이 직무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면 해당 사택이나 숙소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4두55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 제1항 제1호는 '공장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규정에서 말하는 '사용'에 관하여, 그 사용이 공장용 부동산의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하거나 무단 건축 등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지만,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사실상 공장용에 공하고 있으면서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까지 위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8. 4. 28. 선고 97누20922 판결 등 참조).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갑 제14호증, 을 제2, 4, 5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 연면적 합계 1,313.94㎡ 중 766.37㎡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이 사건 건물은 다가구주택 목적으로 신축되었고, 각 동 2층부터 4층까지 층마다 2개 호실씩 총 12개 호실로 구성되어 있다. 각 호실의 내부구조는 거실 겸 주방, 방(2개 또는 3개), 화장실로 구성되어 있다.

2) 이 사건 건물 가동 4층 입도치성실의 방 한 곳만 벽 쪽에 제사도구를 올려놓을 수 선반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방들에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특별한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없으며 대부분 일반 주거용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3)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원거리가 집인 신도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기 위하여 숙식하는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종교단체가 구성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 일반 신도들이 모두 종교활동에 필요불가결한 존재이거나 이 사건 건물에서 숙식하는 것이 직무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수행의 성격도 겸비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 종교활동의 특수성상 종교활동이 야간 및 새벽에 이루어진다거나 장시간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러하다.

4) 이 사건 건물 중 종교지원시설용 또는 숙소 및 창고용으로 이용되는 부분은 종교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은 공간적으로 명확히 분리가 될 뿐만 아니라, 단순히 종교용 물품을 보관하고 있다거나 종교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사용된다는 점 등만으로는 '종교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렵다.

5) 더욱이 이 사건 토지는 생산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별표 19],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별표 1]에 의하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집회장은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물 용도에 관한 법적 규제에 위반한 것으로 언제든지 철거 또는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등 임시적·불법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고, 이를 단순한 행정법규상의 절차 지연 등이 있으나 시정이 가능한 경우라든가 단지 사소한 행정법규의 위반이 있다는 등의 경우라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공○○

판사 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판사 차○○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별지

관계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①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종교행위 또는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 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9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 19] <개정 2017. 2. 3.>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 제1항 제18호관련)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10-11

1과 같다.

[별표 1] <개정 2017. 2. 3.>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祭室), 사당,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6. 종교시설

가. 종교집회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종교집회장(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에 설치하는 봉안당(奉安堂)

끝.